

서울特別市永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 關한條例案

審查報告書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8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2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1992년 9월 21일

〈제13회 임시회(휴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의요지 (제안설명자 : 財務局長 金興權)

가. 제안이유

재단법인인 종교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기로 함.

나. 과세면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얻어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서 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사유로 과세를 아니할 수 있으며
- 동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며 우리구는 위 규정에 의거 의료업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현재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의한 세입면에는 영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배부 참조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 별 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特別市永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에 대한修正案

의안	관련97
번호	

제출년월일 : 1992년 9월 21 일

제출자 : 行政財務委員會委員長

1. 수정이유

조례(안) 제3조(면제신청) 제2항 단서 규정은 자치구로써 세입을 확보하여야 할 실정과 배치되므로 삭제

2. 수정주요 골자

안 제3조 제2항중 단서조항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를 삭제함.

서울特別市永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 대 한區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에 대 한修正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면제신청) 2항중 단서규정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서울特別市永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 대 한區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에 대 한修正案**

개정안	수정안
<p>제 3 조(면제신청)</p> <p>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p>	<p>제 3 조(면제신청)</p> <p>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대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함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를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永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 대 한區稅課稅免除에 關한條例案

의 안	97
번 호	

제 출 년 월 일 : 1992년 8월 28일

제 출 자 : 영 등 포 구 청 장

1. 제안이유

재단법인인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가 의료 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이 사회 복지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 면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글자

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기로 함.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음.

나.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법률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

4. 제정근거

세정 22670-728 ('92. 8. 3)호로 내무부장관의 제정 준칙안 시달로 허가가름

5. 예산상황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